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9-121
----------	--------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등 주민부담 사항을 행정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부설주차장 운영 및 시간(안 제2조~제3조)
- 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대상, 징수 및 방법(안 제4조~제6조)
- 라. 자동차 훼손, 도난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안 제7조)
- 마. 지도·점검(안 제8조)
- 바. 시행규칙(안 제9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8. 8. ~ 2019. 8. 28. (제출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며, 그 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또는 주차요금 징수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요금의 징수대상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차량번호인식기(차량 출입시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가 촬영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말한다)에 따른 차량 출입 시간을 계산하여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징수한다.

제7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주차장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전민재 (☎8206)